

la1.29.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 보고서 초안

1998. 1

정무장관(제2)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 보고서 초안

1998. 1

정무장관(제2)실

1. 대한민국은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당사국으로서 동협약 제18조에 따라 최초보고서와 제2차 보고서를 1986년과 1989년에 각각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으며 1991년과 1993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동 보고서의 심의를 받았다. 제3차 보고서는 1994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의를 받지 못하였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4차 보고서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보고서 작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지침과 제2차 보고서 심의 당시 제기된 사항들을 참조하면서 제3차 보고서 제출이후 4년('94~'97년)동안 대한민국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온 조치를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998년 7월 제1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제3,4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제3차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여 제4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 촉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변화와 정책을 규약의 각 조항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등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현황을 보다 정확히 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여성정책의 국가적 목표. 1989년 제2차 보고서, 1994년 제3차 보고서 제출 이후 한국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실현하였다.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 제분야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3. 여성관련 조직.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무장관(제2)실이 1988년 설치된 이후 여성관련 행정기구가 대폭 확대됨에 동시에 기구간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민간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1994년 각부처내에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있는 여성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였으며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1994)를 설치하여 여성관련 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여성관련 행정조직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여성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4. 여성발전 국가계획.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국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제6차(1987-1991)에 이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 여성개발부문을 포함시켰으며 1993년 수립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에도 주요 경제시책의 하나로 여성개발부문을 포함하였다. 제1차 근로여성기본계획(1994~1997)과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8~2001) 및 영유아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1995~1997)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제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로서 '95.10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을 전부처의 참여하에 수립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책임 있는 여성정책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여성관련 법.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각종 법률의 성차별적인 조항의 개정과 함께 여성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가족법 개정(1990)에 이어 호적법, 상속세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과 1994년 개정된 상속세법은 배우자와 관련된 증여·상속세의 경우 공제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종래 부당한 차별을 받았던 전업주부에게도 상당 부분 재산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1993, 1997)과 함께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1995)을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여성정책 추진이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하여 '97년 11월 국

적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약 2개 유보조항(제9조 및 제16조 사항)중 하나인 9조에 대한 유보조항을 조만간 철폐할 예정이다.

6. 협약의 홍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제1,2,3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협약의 내용을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법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90년에는 유엔 등 협약의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보고서와 제2차보고서를 함께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였다. 1994년에는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 1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비준 이후 10년간의 이행상황을 입법, 사법, 행정분야로 나누어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995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하여 8개 여성관련 협약의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함께 수록한 「여성관련 국제협약집」을 발간·배포하였으며 1996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관한 해설자료를 발간, 배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공무원 연수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남녀평등·의식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검찰, 경찰, 교도소 등 인권관련업무 담당직원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들에게 동 협약의 정신이 철저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전후하여 인권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는데 1995년에는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전개하여 인권의식을 고취하였다.

7. 여성정책 우선관심분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는 가정내 부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인식하고 아동보육시설의 질적, 양적 개선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내실화 3개년계획('95~'97)」에 따라 보육시설이 '94년 6,975개소이던 보육시설을 '97년 9월 현재 14,954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공직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96년 10%부터 2000년까지 20%까지 여성의 합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1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학생 입학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왔던 사관학교 및 공무원양성교육기관들이 여성에게 대폭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0년부터 국·공립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의 성차별의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으로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교과과정의 개정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사의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여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제도를 강화하고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여성경제인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8. 가장 큰 걸림돌.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성차별적인 의식이 단기간내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내 고착된 가부장적 가치관, 여성에게 내면화된 전통적 성역할 인식과 이에 따른 적극성의 결여, 주류문화와의 단절에서 오는 정보부족, 의사결정직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지도력 개발, 기회의 부족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 미래를 향한 계획.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추구하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과 [여성에대한모든차별철폐에관한협약]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써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유엔환경회의,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제안된 강령의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국가적 노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시행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본계획에 의거하여 우리사회 내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제도 및 의식과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에 노력하고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여성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기회 균등기반을 확립하고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여성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21세기의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의 가사와 사회생활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농어업인 등 대상별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여성의 문화·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여성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비정부기구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이 충분하고도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보고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쳤으며 25개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으로도 비정부 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여성의 참여가 가장 미흡한 분야인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의 활성화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차별의 정의

10.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의 2 (정의)

-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헌법상 여성의 지위

11. 현행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를 선언한 양성평등의 원칙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칙은 각 생활영역에 따른 개별적 평등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12. 정치적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제24조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정치적, 공적 생활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적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므로써 여성의 근로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13. 사회적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 제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가족생활 영역에 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관계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14. 이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한 권리는 여성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15.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정책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환기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잠정적 우대조치(제6조),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확대(제15조), 공직참여 확대(제16조), 고용평등(제17조)과 모성보호의 강화(제18조),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 강화(제19조~21조), 여성복지 증진(제22조),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제23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제24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제25조),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제26조), 여성의 국제협력 증진(제27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제28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성차별 개선위원회의 설치, 여성관련 사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16. 이 법의 관련규정(제7조)에 의해 정부는 매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3조에 언급하고 있다.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입법조치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지위

17.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되었고 1989년 개정되었으며 1997년에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정한 여성관련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제5조)라고 하는 고용에서의 남녀균등대우원칙과 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한다.

18. 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에는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제63조),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제68조), 시간외 근로 제한(제69조), 갱내근로금지(제70조), 귀향여비 지급(제74조) 등 여성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과 생리휴가(제71조), 산전후휴가(제72조)와 임신 중의 보호(제30조 2항, 제59조 4항)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제73조) 등 모성보호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9. '89년 3월 이 법의 개정으로 (1) 적용범위를 상시 10인 이상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작업장에도 적용됨) (2)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3)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의 청구없이도 사용자가 주어야 하고 (4) 여성에게 야업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만 있으면 가능하였던 것이 근로자 본인의 동의도 얻도록 하였다. 1997년 개정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인정하였다.

20. 법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데 남녀균등 대우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여성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및 개정

21.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근로에 있어서 남녀균등대우 원칙과 모성보호 원칙이 구체화되었고 모집과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 행위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22. 그 후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규정의 미비, 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1989년 4월과 1995년 8월 두차례에 걸쳐 법의 일부가 개정, 보완되었다. 우선 1989년 개정에서는 첫째,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차별의 정의를 명문화하였고 둘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내로 하여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넷째,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고 다섯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23. 1995년 개정에서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시켰고(제6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정할 때 여성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보완하였으며(제6조의 2 제2항), 가족수당등 임금이외의 금품지급이나 주택자금 융자 등에서의 남녀차별금지(제6조의 3),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제7조), 맞벌이부부의 경우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1조), 분쟁의 조정과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이전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며(제16조) 벌칙을 강화하고(제23조),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3조의 2)

24. 또한 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성차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육아휴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법 제정 및 개정

25. 성차별적 요소를 많이 두고 있던 가족법은 1990년 1월 개정되어 19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0년 가족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친족관계범위의 조정(민법 제777조),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제773, 774조의 폐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개정(제778조 이하), 단접교섭권(제837조의 2), 재산분할청구제도(제839조의 2),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제도(제1008조의 2)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제1057조의2) 등이다. 새로 개정된 가족법은 여성과 남성의 법적 지위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3차 보고서와 제16조 (아)호에 언급하고 있다.

26.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성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민법학자 및 실무가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가족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작업의 주된 방향은 여자의 재혼금지기간(민법 제811조)의 삭제, 호주제도의 폐지 등이다.

27. 민법 제정당시부터 가부장제의 핵심 제도로서 그 폐지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1997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은 98년 12월까지 개정해야 하며 99년 1월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개정때까지 그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에 어긋나며, 이 제도는 족벌적-가부장적 대가족 중심의 사회와 자급자족 원칙의 농경사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예비부부와 기존의 동성동본 부부들은 「혼인에 관한 특별법」 없이도 자유로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도 혼인의 자녀가 아닌 적출자로서 보호받게 되었다.

소득세 및 상속세법 개정

28. 정부는 가정내에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994년에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1996년도부터 시행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이 상속액 기준으로 최고 10억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 증여세 공제금액이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9. 나아가 1996년 12월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 공제를 더욱 확대하였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30억원 한도)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없거나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97.10월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이 위헌결정되어 앞으로는 이혼시 분할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30. 한국은 1983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였고 1984년 12월 27일 제9조(여성 및 자녀의 국제관련사항)와 제16조(혼인과 가족관계 관련 일부조항)를 유보한 상태로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규정(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협약비준시 유보했던 내용 중 제16조 제1항 (다)(라)(바)호에 대한 유보는 1990년 가족법개정에 의하여 1991년 3월 15일 철회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유보하고 있는 협약의 조항은 국적에 관한 제9조와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선택할 권리」를 정한 제16조 제1항 (사)호이다.

31. 현재 이 협약 제9조와 관련하여 '97.11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유보조항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9조에 언급하고 있다. 제16조 가족성(姓)의 선택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6조 (사)호에 언급하고 있다.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32. 현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 있어 남녀차별은 없으며 특히 현행법은 법, 제도상의 남녀차

별이나 고용과 관련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성차별개선위원회

33. 성차별개선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3조에 언급하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

34.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등)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이 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에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하여 지원하거나 이 법(16-18조)에 규정된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6개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사업주, 공익을 대표하는 각 5인으로 구성된다.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사관학교 여학생 입학허용

35. 그동안 각군 사관학교는 전투지휘관 위주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여성입학을 제한하여 왔으나 우수한 장기복무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설치법(1995. 12) 및 동 시행령(1997. 3) 개정으로 사관학교에 여성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처음으로 20명의 공군사관학교 여성생도를 합격시켰으며 육군사관학교는 1998년부터, 해군사관학교는 1999년부터 여성생도를 모집한다. 현재 여성생도의 수는 모집정원의 약 10%에 해당되며 각군 사관학교는 점차 여학생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여성입학비율 확대

36.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에서 여학생 입학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경직적인 여성입학제한제로 인하여 오히려 여학생에게 불리한 제한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특수직 공무원 임용기관의 여성제한 할당비율을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학은 1997년 입학정원의 20%, 1998년 30%, 2000년 50%로 확대하고 철도전문대학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에서 50%로 확대하며 경찰대학은 1997년부터 4%에서 10%이상 확대하게 된다.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직장내 성희롱 규제방안 모색

37. 기업체내에서의 성차별 유형의 하나인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위한 민간기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되었다. '95. 11월 금호그룹이 내부규정으로 「성희롱방지 지침서」를 만들었으며 현대그룹, 서울대 등에서도 자체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하여 성희롱 규제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직장내 성차별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직장내 성희롱 관행과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38.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개정전 법에서는 시설입소대상자인 요보호자를 '요보호여자'라고 하여 윤락행위 주체상 남녀구분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윤락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계가 양성평등의 개정방향을 요구하였고 1995년 1월 개정에서 '요보호자'로 전환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6조에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정무장관(제2)실

39. '88년 2월 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제2)실을 발족하고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하였다.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관련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조직으로, 발족당시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포괄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했으나 '90년 6월에 여성분야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통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40. 정무장관(제2)실은 정부차원의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소관 부처간에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여성정책의 이행과 관련되는 각 원, 부, 처, 청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미리 정무장관(제2)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41. '90년대에 들어와 정무장관(제2)실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여성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94년 각 부처내에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남녀평등관점의 주류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98년부터 시행되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종합,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42. 정부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83년 1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정책지원기관인 동시에 여성정책의 최고 심의조정기구로서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여성분야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3.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경제원장관, 통일원장관, 정무장관(제2)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무, 내무, 법무, 교육, 문화, 체육, 농수산, 보건복지, 노동부, 총무처 장관 등의 당연직위원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44. '93년 12월 동 위원회의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는 바, 그 내용은 위원수를 25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정부 각 부처에 대하여 여성관련업무를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동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45.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와 2개의 분과위원회, 1개의 특별분과위원회, 그리고 여성정책심의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차별개선위원회

46.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각종 법, 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정부차원의 성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7. 동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장관(제2)으로 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10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된 남녀차별 사례, 남녀차별적인 법,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기타 여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48. 동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의 뿌리깊은 성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97년 9월 공공부문의 「성차별개선지침」을 개발하였으며 '97년 12월중 민간부문의 「성차별개선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동 지침은 성차별개선위원회 심의활동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49. 국회는 1994년 6월 28일에 국회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996년 한해 동안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의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합의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여성관련 법의 제·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각부처의 여성관련 행정기관

50.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장관(제2)실 이외에 일반부처의 기능에 따라 전 부처에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각 부처내에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있는 여성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였다.

51.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정책실내에 여성문제를 총괄하는 가정복지심의관을 두고 있다.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보육아동과 및 노인복지과를 관장하고 있다. 여성복지과의 주요업무는 여성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 수립, 여성발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불우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관장 등이며 아동복지과는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52. 노동부에는 근로여성국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근로여성정책과와 부녀소년지원과의 두 개과를 두고 있다. 근로여성정책과는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남녀고용평등법의 운용, 고용차별조사 및 지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부녀소년지원과에서는 직장보육시설 등 여성취업 지원제도의 운영,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운영, 기타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업무와 근로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근로여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여 위하여 '88년 12월 근로여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은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및 노사단체 대표,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출연 여성연구기관

53. 정부는 '83년 여성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여성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여성활동에 필요한 지적·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직은 이사회, 원장, 부원장, 사회교육원장 밑에 연구센터, 정보센터, 사무국, 사회교육원을 두고 있으며 총 인원은 137명이다.

54. '91년 4월 정부는 여성정책 추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정무장관(제2)실로 이관하였다.

55. '95년 12월 정부는 종합적인 여성정보의 생산과 가공,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여성개발원내에 여성정보센터를 발족하였다. '97년 9월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내에 사회교육원을 설치하였다.

②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56. 정부는 여성정책 분야를 본격적으로 국가발전계획에 통합하기 위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이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에 여성개발 부문을 별도로 포함시키고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및 국제협력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또한 '93년 정부에서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도 주요 경제시책의 하나로 여성개발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57.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정부는 매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간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여 동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추진되어야 할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함께 남녀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하게 된다. '97년 11월 현재 정무장관(제2)실이 마련한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공청회와 전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정된 계획안은 부처간 재협의과정을 거쳐 '97년 12월 개최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다.

58.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 각 부처와 시·도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게 되며,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종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59. 정부는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5년 10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1)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1.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협동조합 활성화 • 종교시설 활용방안 강구
2.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아동지도 확대
3. 학교급식의 전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확대
4.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공채경쟁채용시 여성임용 촉진방안 도입 •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기존 여성입학제한제도 폐지 • 각종 정부관련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
5.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를 사회보험 등 공공 부문에서 분담 •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
7. 여성인력 양성체제 확충·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 및 기술교육 강화 • 재취업 여성인력의 직업훈련 강화
8.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보센터 설치 •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9.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방송관련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 대중매체의 성차별 지수 및 기준 마련 • 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보급

③ 정부의 여성개발예산

60. 정무장관(제2)실은 1996년 7월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0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97년도와 '98년도 예산에 정부출연금 100억원씩을 계상하였다.

61. 기금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내용은 시민사회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용사업, 여성의 국제협력 증진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는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62.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여성정책보좌관실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여성정책자문기구인 서울여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기도는 여성정책실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차원의 여성문제연구 및 정책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63.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차원의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행정의 활성화가 예견된다.

제 4 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 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

64.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65. 정부는 1996년 공공부문에서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의 하나로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이는 공무원 채용때 필기시험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 이하일 때는 성적순에 의해 목표미달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여성채용목표율은 96년 10%, 97년 13%, 98년 15%, 99년 18%, 2000년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는 행정·외무고시와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적용된다.

66.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따라 동 제도 실시전인 1995년만 해도 해당 직종 전체의 여성합격자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9.0%로 상승했다. 1996년 이제도에 의해 추가로 합격한 여성은 행정고시 2명, 외무고시 1명, 그리고 7급 공채에서 16명이며 1997년에는 행정고시 4명, 7급공채 14명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2)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이후 여성공무원 합격 현황 비교 (단위 : 명, %)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전						여성채용목표제 실시후							
	1994			1995			1996				1997			
	합격 자수	여성 수	여성 비율	합격 자수	여성 수	여성 비율	합격 자수	여성 수	여성 비율	비 고	합격 자수	여성 수	여성 비율	비 고
행정고시	250	15	6.0	183	19	10.4	192	19	9.9	2명 추가	224	25	11.2	4
외무고시	35	3	8.6	35	2	5.7	41	4	9.8	1명	45	9	20.0	.
7급공채	598	21	3.6	334	5	1.5	383	25	6.2	16명 추가	317	27	8.5	14
계	883	39	4.4	552	26	4.7	612	48	7.8	19명 추가	586	61	10.4	18

(자료) : 정무장관(제2)실, 내부자료, 1997.

67.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동제도는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에게 부여되는 5점의 가산점을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고용인센티브제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법인체 등 총 106개기관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8. 공기업여성고용인센티브제는 공기업이 채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보다는 실적이 낮은 편이다. 도입 첫해인 1996년에는 총 106개 기관중 15개 기관(14.2%) 정도가 실시하는데 그쳤으나,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표 3)

(표 3) 공기업여성고용인센티브제 도입현황 (1996. 8 현재) (단위 : 개, %)

구분	적용대상(A)	실시기관수(B)	비율(B/A)
정부투자기관	18	4	22.2
정부재투자기관	34	5	14.7
정부출연기관	54	6	11.1
계	106	15	14.2

(자료) : 정무장관(제2)실, 내부자료, 1997.

69. 공기업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공항공관리공단이 국내 최초로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1997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시 채용인원의 20%를 여성으로 선발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공단측은 90년 이후 대졸 신입사원 공채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채용인원 377명중 여성은 14명으로 3.7%에 불과해 이같은 남녀고용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한 것으로 밝혔다.

70. 이상과 같이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여성 NGO들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여성 NGO들은 19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여성의 세력화 관련 행동강령을 구체화하고 '96년 총선에서 여성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고 여성고용할당제와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적극 추진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채용, 승진, 직업훈련에서도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② 여성특별 보호규정

71.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특별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 2 조 (나),(바)호에 언급한 바와 같다.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72.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공립연수기관, 사회교육기관, 기업체에서 남녀평등의식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73. 정부는 남녀간의 차별이나 성역할 고정화를 유발시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철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남녀평등 의식교육 실시

74. 정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합리한 통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급 국.공립 연수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27개 교육과정에서 총 4,905명, 1995년에는 185개 교육과정에서 총 18,468명이 남녀차별의식 개선교육을 받는 등 매년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수강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총 45개 국.공립연수기관 중 33개 기관에서 185개의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중 76개과정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나머지 과정은 특강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규과목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75. 많은 민간 여성단체들이 각종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성사회교육원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를 들 수 있다.

76. 1996년에는 그동안 남녀평등의식교육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5개 국.공립연수기관과 19개 정부투자기관 연수원에 배포하였다. 1997년에는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제작,보급함으로써 실질적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77. 정부는 1992년부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사회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1997년 7월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내에 한국사회교육원을 발족시켰다.

78. 그밖에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충북지역 등 7개 지역에서는 강사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강사은행은 일반인들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출강교육, 교육프로그램 자문과 교육자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사진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은행 1개소에 약 60-70명 정도의 강사진이 활동하고 있다. 1984년에서 1996년까지 13년간 총 1,386,971명을 대상으로 총 11,445회 출강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79.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인 방송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1985년 2월 15일 「여성에 대한 편향적 묘사 억제 권고결정문」을 각 방송사에 송부하였고, 1990년 '시청자 불만위원회'를 발족, 여성문제와 함께 방송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여성에 관한 공공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TV 공익광고를 제작, 전국의 TV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영하고 있다.

80. 한국여성개발원은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등의 영상교재를 제작하여 지방의 공공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각급 학교, 여성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개인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1992년까지 영상교재의 대여실적은 총 10,800회로 180여만명이 관람하였다. 최근 2년(1995-1996)간 판매 및 대여 실적은 3,000건에 달하고 있고, 그간(1984-1997)의 영상교재 제작 실적은 총 40여편에 이른다. 많은 민간여성단체들도 여성문제에 대한 연극, 비디오 등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의 전화는 「굴레를 벗고서」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자기만의 방」이라는 연극을 상영하였다.

81.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과 대중매체의 문제를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5년에는 텔레비전의 성차별적 내용을 시범 모니터하였으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안에 대중매체 편견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1996년 설치된 성차별개선위원회에 흡수되었다). 1995년 10월에 발표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에는 대중매체 프로그램에 나타난 여성차별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텔레비전의 여성차별지표」를 개발하였고 현재 모니터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제 6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 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82. 우리나라는 매춘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1961년 11월 9일에 법률 제771호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는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 이후 1995년 1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개정되었다.

83. 1995년 1월 개정되고 1996년 1월부터 시행중인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락행위를 한 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쌍벌 규정), 영입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해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한 강제예속상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윤락여성 보호 대책

84. 정부는 가출여성 등의 윤락화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전국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62개소의 간이상담소에 전문상담원 406명을 배치하였다. 상담원을 통해 보호,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여성은 선도보호시설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85. '96년 1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윤락여성에 대한 직업보도시설이 있었으며 적발된 윤락여성에 대해 1년 동안 시설에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직업교육을 시켰으나 법개정 이후 선도보호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86. 선도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변화에 중점을 둔 상담지도 등을 하고 있다. 시설보호 기간은 6개월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12개 선도보호시설의 '96년 입소한 인원은 470명으로 시설규모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나 시설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입소율도 높아지고 있다. (표 4)

(표 4) 윤락여성 보호 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	시설수	입소자수	퇴소자총수	퇴소자 실적			연도말 현원
					취직	귀향	기타	
직업	1994	22	2,326	2,667	569	1,603	495	799
보호시설	1995	21	1,827	2,067	452	1,322	293	559
선도보호 시설	1996	12 (1)	419 (51)	487(51)	70	82(8)	307(51)*	284(34)

(주) : * 1996년 () 일시보호소 운영실적임.

* 기타 307명(51명) = 연고자 인계 176명(36명), 결혼 63명, 기타 68명(7명)

(자료) :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시설 현황」, 1996.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

87. 인신매매는 여성의 성적착취나 매춘으로의 유입 경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현행 법률 및 법령으로는 형법 중 「약취와 유인의 죄」(제31장 제287조-제296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형법 중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제257조-제265조), 「강간 및 추행의 죄」(제32장 제297조-제306조),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제276조-제28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이 함께 적용된다.

88. 이중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는 인신매매를 다루는 기본 축이다. 특히 제288조 2항의 「부녀매매의 죄」는 형사사법 체계상 인신매매를 가장 전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규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수취, 매매 등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 2에서도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추(醜)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녀를 매매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89. 정부는 1992년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무장관(제2)실, 법무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정무장관(제2))
-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법무부)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중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 (문화체육부)
-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보건복지부)
- 경찰서내 여성상담실 및 전용전화 설치, 운영 (경찰청)

성폭력 관련 법률

90. 성폭력에 관한 법률로는 1994년 1월 제정되고 1997년 7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1995년 12월에 제정, 1996년 7월에 시행된 여성발전 기본법 제25조 1항에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역시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

9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국가의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9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7년 7월 30일에 장애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강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신설 및 이를 비친고죄로 함으로써 아동보호 강화
-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벌칙조항 신설
- 청소년 보호 등의 시설종사자가 비친고죄 범죄의 피해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규정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기능 강화

성폭력피해자 보호사업

93.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개인도 설치가 용이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97. 10월 현재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 상담실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4.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97년 10월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전문가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5) 성폭력 피해상담 실적

연도	구분 상담소 (개 소)	상 담 실 적			상 담 조 치			
		계	본인 상담	보호자 상 담	선도 귀가	시설 입소	치료 의뢰	기 타
1995	12	3,245	1,868	1,377	276	52	242	2,675
1996	23	10,093	5,489	4,604	1,621	279	1,044	7,149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95. 정부는 한국여성개발원 등 7개 기관, 단체를 성폭력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간 240명(공무원 120명, 민간인 1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여 '97년 10월 현재 910명의 성폭력 상담원을 양성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지원 확대, 성폭력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폭력, 학대, 성적 착취등으로부터 여자어린이의 보호

96.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4조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接客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97년 7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함으로써 아동보호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97. 정부는 1996년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부처별로 필요한 조치

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동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은 정무장관(제2)실, 공보처, 내무부(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매체에서의 폭력추방 및 폭력영상물 단속 강화 (공보처, 문화체육부)
- 가정폭력예방센터, 일시피난시설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정무장관(제2)실)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경찰청)
- 신고센터·상담기관·쉼터·경찰·병원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적 긴급신고체계 구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98. 1997년 12월에 제정된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9. 가정폭력범죄를 형법상 상해·폭행·체포·감금 등 일정한 범죄와 이등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로 하고 직무 또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이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등의 장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0.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격리·접근금지·의료기관등에의 위탁·구치소등에의 유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1. 그리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는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02. 이 법은 1997년 12월에 제정하였는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0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사업

104. 정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30일 이내)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7. 9월 현재 7개소가 있다.

105.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무료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1987년부터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10여개의 피난처가 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106.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성폭력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계기로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07. 정부는 군대위안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2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과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하여 국민적·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한다는 방침하에, 1993년 6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는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보호,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거택보호비·노령수당 등 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일시금 500만원과 월 50만원 지원, 무주택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입주기회를 부여하며 치아보철료를 1인당 108만원 지원하고 있다. '97년 10월 현재 동법에 의해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158명이다.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거 및 국민 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108. 헌법 전문 및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동등한 보장 및 차별」을 금하고 있다. 동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동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여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률에서도 여성을 이 유로 하여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만2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는 만40세 이상, 국회의원의 경우는 만25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여성유권자

109. 1996년 4월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는 총 31,488천명이었고, 이중 여성은 15,998천명으로 남성의 15,490천명에 비하여 507천명 많은 50.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입법부

110. 1985년부터 1992년 사이 여성의 국회진출은 12대(1985~1988)의 경우 국회의원 총 276명중 여성이 8명(2.9%), 13대(1988~1992)의 경우 299명중 6명(2.0%)이었으며 14대(1992~1996)에서는 296명중 7명(2.3%), 15대(1996~2000)는 299명중 9명(3%)이다. (표 6)

(표 6) 국회의원 수

(단위 : 명,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수	여성의원		지역구		비례대표제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3대 (1988~1992)	299	6	2.0	0	0.0	6	8.0
14대 (1992~1996)	299	7	2.3	1	0.4	7	11.0
15대 (1996~2000)	299	9	3.0	2	0.8	7	15.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15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1982, 1985, 1992, 1996.

111.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제1회 동시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의회 여성 의원은 71명으로 전체 4,541명 중 1.6%를 차지하여 1991년 기초의회 선거시보다 0.7% 증가하였다. 광역의회에는 56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어 전체 972명(비례대표 97명)의 5.8%를 차지하여 1991년의 광역의회 선거보다 4.9% 증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명(0.4%)의 여성단체장이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여성 의원이 약간이나마 증가하게 된 것은 그간 지방의회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했고,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각 정당들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56개 여성단체들은 '20% 지방의회 여성참여를 목표로 결성된 할당제 모임'을 구성하고 정당에 비례대표제 10%에 여성할당 100%를 주장하면서, 당내 여성국과 연대하여 당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표 7)

112. 1995년 4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의회 여성할당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광역의원 97명 중 여성은 42명으로써 43.3%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자가 34.4% 당선되어 향후 여성의 참여율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수

(단위 : 명, %)

구분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총수	여성의원 및 자치단체장수	비율
기초의회	4,541	71	1.7
광역의회	972(비례대표 97명포함)	56(비례대표 43명포함)	5.8
기초자치단체장	230	1	0.4
광역자치단체장	15	0	0.0
계	5,758	128	2.2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방안」, 1996.

113.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인 가부장적인 전통, 여성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여성 스스로의 소극적인 의식, 정당의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선거구제도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행정부

114.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초대 상공부장관에 여성을 임명하면서 최초의 여성장관이 탄

생하였으나 그후 1988년 여성정책 전담부처인 정무장관(제2)이 여성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여성장관은 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증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각에 있어 정무장관(제2), 환경처장관, 보건사회부장관에 여성을 임명하여 여성이 전체 각료 24명 중 12.5%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7년 현재 여성장관으로는 정무장관(제2) 1명(5.0%)이 있으며 여성차관도 정무차관(제2) 1명이다. (표 8)

(표 8) 여성장관 현황

(단위 : 명, %)

	전체장관수	여성장관수	비율
1985	23	1 (보건사회부)	4.3
1993	24	3 (정무장관(제2), 환경처, 보건사회부)	12.5
1994	24	2 (정무장관(제2), 교육부)	8.3
1997	21	1 (정무장관(제2))	4.8

(자료) : 총무처, 내부자료, 1997.

115. 199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913,104명 중 253,917명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91년 24.5%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행정부가 27.9%, 입법부 29.4%, 사법부 22.7%, 헌법재판소 29.6%, 중앙선관위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은 31.7%, 지방공무원은 21.8%이다. 직급별 경력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상위직급은 2.5%이며 대부분이 하위직급에 몰려있다.

116.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88년 8.1%에 불과하던 것이 '96년에는 27.2%로 3배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는 현재 여성의 상위직 임용확대조치로서 여성공직채용목표제를 도입, 5급 공채(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와 7급 공채시험에 적용하고 있으며, 채용목표비율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20%까지 높여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직, 승진, 교육훈련등 모든 인사과정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과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세무대학, 철도대학, 경찰대학)의 여성입학을 늘려나가고 있다. (표 9)

(표 9) 직급별 행정부 여성공무원 수 및 구성비 (1996년 12월 현재)

(단위 : 명, %)

구분	여성공무원		국가여성공무원		지방여성공무원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일반직	56,157	19.5	11,646	13.0	44,511	22.3
(1-5급)	(685)	(2.5)	(231)	(1.9)	(454)	(2.9)
(6-9급)	(53,832)	(21.7)	(10,944)	(14.8)	(42,888)	(24.6)
연구, 지도직	1,640	13.3	471	13.5	1,169	13.2
기능직	44,797	24.1	21,477	26.5	23,320	22.2
특정직	138,731	34.8	138,377	36.9	354	1.6
정무직	3	0.8	2	2.1	1	0.4
별정직	6,365	42.7	550	15.6	5,815	51.1
(5급 이상)	(266)	(8.8)	(24)	(2.8)	(242)	(11.3)
(6급 이하)	(6,099)	(51.3)	(526)	(19.8)	(5,573)	(60.4)
고용직	4,121	43.8	3,096	90.4	1,025	17.1
계	250,174	27.9	175,148	31.7	75,026	21.8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1997.

사법부

117. 특정직 공무원인 판사의 경우 1996년 전체 판사 1,292명 중 여판사는 72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42명(3.7%), 1995년의 61명(4.9%)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이다. 검사의 경우는 1996년 현재 전체 1,006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1.6%이다. (표 10)

(표 10) 여성 판·검사 현황

(단위 : 명, %)

	판사			검사		
	총수	여성수	비율	총수	여성수	비율
1992	1,133	42	3.7	858	-	0.0
1993	1,113	46	4.1	911	6	0.7
1995	1,239	61	4.9	946	10	1.1
1996	1,292	72	5.6	1,006	16	1.6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1997.

118. 변호사의 경우는 1997년 8월 현재 총 3,338명중 여성이 62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법관 신규채용을 위한 국가고시(사법시험)에 합격한 여성의 수가 급증('97년 8%)하고

있어 향후 그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각부처 위원회

119. 정부는 각종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989년 이후 새로운 정부방침(국무총리 지시)으로 각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증대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이의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최근 각종위원회내 여성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5년까지 30%로 목표율을 늘려나갈 것을 정하였다. 특히 1995년 6월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세계화 추진위원회 「10대 중·단기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율보다 미만이거나 여성의 참여가 전혀없는 위원회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위원회를 특별관리위원회로 정하여 여성위원 참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전문가 육성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120.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1997년 9월말 현재 1,186개이고 위원수는 17,450명이다. 여성참여율(위촉직 기준)은 11.1%로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구분	전체 위원회수	관리대상 위원회수	관리대상 위원회의 위원수						위촉직여성 참여율 (%)
			전체		당연직		위촉직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합 계	1,186	914	15,031	1,404	4,784	153	11,269	1,251	11.1
중앙부처	310	199	4,148	346	1,022	22	3,126	324	10.4
시·도	876	715	10,883	1,058	2,740	131	8,143	927	11.4

(자료) : 정무장관(제2)실, 내부자료, 1996.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여성단체

121.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는 남녀 모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여성단체활동의 주요 목적은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각 단체별 특성에 따라 여성의 자질개발과 지위향상, 건전가정육성·소비절약을 위한 계몽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6년 현재 활동중에 있는 여성단체 수는 전국적으로 대략 4,500여개에 달한다.

122. 최근 여성단체는 회원간 기술협력증진, 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 등 직능단체로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점차 그 활동영역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 여성문제 등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00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 8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정부는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관련 회의 및 기타 국제기구 주최 각종 회의의 대표단에 여성을 참여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 참여비율을 가급적 높여 국제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한국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무장관(제2)실은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회의 정부대표단의 여성참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제업무 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3개 과정의 국제협력 전문요원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에 재선되어 그 임기가 2001년까지 연장되었다. 1996년 김영정 전 정무장관(제2)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이연숙 정무장관(제2)가 정부특사로 인도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24. 외무부에는 1997년 7월 현재 총 1,239명중 47명의 여성이 있다. 이는 총 직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2년의 2.7%에 비하여 1.1% 증가한 것이다. (표 12)

(표 12) 여성 외무공무원

(단위 : 명, %)

연도	총 외무공무원수	여성 외무공무원수	여성외무공무원 비율
1992	1,193	32	2.7
1996	1,239	47	3.8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1997.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25. 우리 정부가 1984년 CEDAW협약에 가입할 당시 동 조항을 유보하였으나,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하여 '97년 11월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동항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할 예정이다. 국적법 개정내용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6. 개정전 국적법은 출생당시 아버지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한해 그 자녀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부계혈통주의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부모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이면 즉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도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국민이 되게하였다.

127. 그이외에도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국적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모두 삭제하였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국적취득 및 국적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있어서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다.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 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헌법과 교육법의 포괄적 선언

128.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권리는 헌법과 교육법에 의해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와 교육법 제 81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기회

129. 헌법 제 31조 2항과 교육법 제 8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초등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이며 중학교 교육은 군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서 우선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97.1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을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기로 하였다.

130. 1995년의 국민 평균교육년수는 여자 9.26년, 남자 11.09년으로 남자의 교육년수가 여자보다 1.83년 더 많다. 그러나 1990년과 비교하여 여자는 0.68년, 남자는 0.54년이 증가하여 남녀 격차는 줄어들었다. (표 13)

131. 국민의 학력구성비는 전체적으로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줄고 고졸과 대졸의 비율이 증가하여 고학력화 추세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초졸과 중졸의 낮은 학력자의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고졸과 대졸의 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 여자의 학력은 1990년 고졸 28.4%, 대졸 8.3%에서, 1995년 고졸 34.1%, 대졸 12.8%로 증가하여 고졸과 대졸이상 비율의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표 13)

(표 13) 국민의 학력구성비 (25세이상)

(단위 : %)

년도		학력구성비 (%)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1990	여	43.0	20.3	28.4	8.3
	남	23.3	17.6	38.9	20.1
1995	여	36.2	16.9	34.1	12.8
	남	18.6	14.5	41.2	25.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132. 취학전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1997년 취원율은 여자 40.3%, 남자 39.6%이다. 완전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여자 98.9%, 남자 98.4%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는 남녀 모두 100%의 취학률을 이루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남녀의 취학률의 격차가 계속 감소하여 1997년에는 여자 94.3%, 남자 95.0%로 거의 같다. 대학교의 경우는 여자의 취학률이 1990년 23.9%에서 1997년 50.9%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남자의 취학률의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여(50.0% → 85.7%)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약 3/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14)

(표 14) 각급학교 취원(학)율

(단위 : %)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990	31.4	31.8	102.2	101.3	98.5	97.9	85.4	90.5	23.9	50.0
1995	39.9	40.0	100.3	99.9	101.8	101.4	91.3	92.4	38.6	69.7
1997	40.3	39.6	98.9	98.4	101.3	100.8	94.3	95.0	50.9	85.7

(주) : 대학교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이 포함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33.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남녀 모두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완전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여자의 경우 1990년 32.4%에서 1997년 현재 57.7%로 크게 증가하여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에서는 남자의 진학률이 여자보다 높다. 그러나 1997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체 진학률은 81.4%인데 그중 여학생의 진학률이 83.5%로 남학생보다 높아졌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전체 29.2%)은 여학생이 25.9%로 남자 32.9% 보다 낮다. (표 16)

(표 15) 각급학교 진학률

(단위 : %)

년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고등교육	
	여	남	여	남	여	남
1990	99.8	99.8	95.0	96.3	32.4	33.9
1995	99.9	99.9	98.4	98.6	49.8	52.8
1997	99.9	99.9	99.4	99.4	57.7	62.4

(주) : 대학교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이 포함됨.

(주) : 진학률 = (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연도 졸업자)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34.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고교입학시험에서 남녀 학생의 고교 정원에 맞추어 별도의 합격 점수를 적용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고교 입학기회를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관련 학부모와 민간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6학년도 응시자의 경우 불합리한 합격선에 의해 탈락한 여학생들을 전원 구제하는 임시 조치가 취해졌으며, 1997학년도 이후에는 남자 일반계 고등학교와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의 남녀공학화, 고입선발고사의 폐지와 내신성적을 통한 전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고교 진학에 있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35. 공직 임용을 전제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무원양성교육기관에의 여성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2조 (라)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직업교육에의 접근 기회

136.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은 1997년 현재 여학생이 56.2% : 43.8%, 남학생이 61.4% : 38.6%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재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다. 1997년, 실업계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전공별 비율은 상업계 26.0%, 공업계 3.2%로 1985년 상업계 28.4%, 공업계 0.1%에 비해 공업계는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남학생의 상업계 비율 5.9%, 공업계 비율 23.4%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여학생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이 상업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학생의 공업계 과소, 상업계 과다 진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7년 현재 10개교의 순수 여자공업계고교를 신설·운영 중에 있다. 또한 1995~1997년에는 여자 상업계 학교 4개교의 21개 학급이 공업계 학급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 공고의 남녀공학화를 통해 남녀공학 공고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1995년도 92개교 32,367명에서 1997년도에는 98개교 43,403명으로 늘어났다. (표 17)

(표 16)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분포

(단위 : 명, %)

년 도	성 별	계	일반계	실업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기 타
1990	여 자	1,073,179(100.0)	60.1	0.5	0.3	27.5	11.6
	남 자	1,210,627(100.0)	68.4	2.9	15.6	6.3	6.8
1995	여 자	1,038,596(100.0)	53.7	0.7	2.4	27.7	15.5
	남 자	1,119,284(100.0)	61.5	1.3	22.2	6.1	8.9
1997	여 자	1,128,098(100.0)	56.2	0.7	3.2	26.0	13.9
	남 자	1,208,627(100.0)	61.4	1.2	23.4	5.9	8.1

(주) : ... 해당 숫자 미상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37. 1983년에 과학영재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어 1997년 현재 전국적으로 15개교에 이르는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설립 당시 전무했던 여학생의 비율이 1990년 16.1%(120명), 1997년 26.7%(1,028명)으로 증가하였다.

138.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여학생 전공계열 분포에 의하면 사회계와 자연계, 인문계의 비율이 증가하고 전통적으로 여학생의 주된 진학 분야였던 의약계와 사범계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1997년 현재 전문대학의 여학생 전공계열별 분포는 인문계 6.5%, 사회계 26.5%, 자연계 27.8%, 의약계 16.8%, 예체계 14.8%, 사범계 7.5%이다.

139. 4년제 대학의 여학생 전공계열 분포도 전문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와 자연계가 증가하고 인문계, 사범계, 의약계 등이 감소함으로써 성정형적인 전공 선택에서 어느정도 탈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여성인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1996년에는 최초로 여자대학(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이 신설되어 전자계산, 전자, 건축, 환경공학과 4개학과에 260명의 여학생이 진학하였으며, 1997학년도에는 주간 총 증원수 7,175명 중 58%에 해당되는 4,150명이 전자, 컴퓨터, 디자인 등 첨단산업 관련분야로 증원되었다. 특히 여자대학의 이공계 입학정원은 이화여대 등 8개대학 입학정원 14,440명 중 3,250명으로 22.5%에 이른다.(표 18)

(표 17)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여학생 전공계열별 분포

(단위 :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7년	
	전문대학	대 학	전문대학	대 학	전문대학	대 학	전문대학	대 학
인문계	2.4	25.6	4.6	24.5	6.4	22.9	6.5	22.3
사회계	17.7	14.6	21.6	17.2	26.4	20.7	26.5	23.3
자연계	24.3	19.9	25.3	27.0	27.0	28.6	27.8	28.8
의약계	26.1	5.2	21.8	4.8	16.7	4.6	16.8	4.5
예체계	12.8	13.2	15.2	13.2	15.6	12.5	14.8	12.1
사범계	16.6	21.5	11.6	13.2	7.8	10.8	7.5	8.9
계	87,123 (100.0)	25008 (100.0)	119345 (100.0)	296129 (100.0)	214310 (100.0)	378418 (100.0)	277658 (100.0)	463739 (100.0)

(주) : 대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40.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에 대해서는 제11조에 언급되어 있다.

교육결과

141.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졸업률은 매우 높아 거의 대부분의 남녀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현재, 중학교 졸업률은 여자 98.2%, 남자 97.4%, 고등학교 졸업률은 여자 95.8%, 남자 93.2%로 1992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남자보다 여자의 졸업률이 약간 높다.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여학생의 졸업률이 1990년 94.2%에서 1996년 90.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남학생보다 상당히 높다. (표 18)

(표 18) 각급학교별 졸업률

(단위 : %)

년도	중 학교		고 등 학교		대 학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980	89.8	98.4	90.4	98.4	90.4	98.4
1985	93.6	100.0	89.3	94.7	89.3	94.7
1990	97.7	97.3	92.0	96.0	71.2	94.2
1996	97.4	98.2	93.2	95.8	75.4	90.8

(주) : 대학교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이 포함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42.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에 37.0%, 23.8%, 13.3%, 1997년에 각각 40.6%, 30.3%, 18.6%로 여자 취득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학사학위의 경우 여자취득자의 비율이 1995년부터 전체 취득자의 40%를 넘어섰다. (표 19)

(표 19) 학위취득자수 및 여자비율

(단위 : 명, %)

년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계	여자비율	계	여자비율	계	여자비율
1995	180,664	41.4	27,398	28.4	4,107	16.9
1997	192,465	40.6	30,355	30.3	4,792	18.6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143. 1997년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자 68.4%, 여자 76.3%로 1990년에 비해 남녀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그동안 여자보다 낮았던 남자 취업률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전문대학과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취업률이 더 높으나 여자의 취업률이 매우 높아져 그 격차는 줄어들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1990년의 취업률이 여자 68.2%, 남자 78.6%에서 1997년에 여자 74.4%, 남자 77.1%로 높아졌으며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90년 여자 39.7%, 남자 65.1%에서 1997년 여자 52.5%, 남자 68.7%로,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90년 여자 62.0%, 남자 85.7%에서 1997년 여자 75.4%, 남자 92.4%로 각각 높아졌다. (표 20)

(표 20) 각급학교별 취업률

(단위 : %)

년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1990	여자 60.2	68.2	39.7
	남자 42.6	78.6	65.1	85.7	
1995	여자 74.3	70.9	50.0	69.2	
	남자 64.3	79.3	69.2	91.5	
1997	여자 76.3	74.4	52.5	75.4	
	남자 68.4	77.1	68.7	92.4	

(주) : 대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 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교과과정 및 시험

144. 초등교육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남녀학생이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제되어 왔으나 중등 교육에서는 실과교과목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남녀 구분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여학생에게는 가정,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이수하도록 하는 성분리적인 교과이수가 이루어져 왔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실업·가정을 기술·산업과 가정으로 분리 독립시켜 남녀학생 모두에게 공통 필수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성에 따른 교과목 이수의 차별을 해소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실과교과목에 있어 성분리적인 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편입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남학생도 가정교과를, 여학생도 기술교과를 배우게 되어 교육과정상에 있어서 성분리적인 이수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등의 교과도 남녀 구분없는 선택교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교과에서 남녀 성차를 없앨 예정이다.

145. 남녀공학고등학교에서의 계열별 내신성적의 성별 분리 산출이 여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여성 단체와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997년도부터 남녀공학고등학교에서 계열별 내신성적의 산출시 남녀석차를 통합하여 산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남녀공학 학교체제 내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교원 비율

146.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 여교원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여교원 비율은 1990년 50.0%, 46.2%, 22.7%에서 1997년 56.6%, 49.7%, 24.2%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에서의 여교원 비율은 평교사의 여교원 비율보다 낮다. 초·중·고학교별로 교장의 여교원 비율은 1990년 2.5%, 6.3%, 4.0%에서 1997년 4.2%, 6.7%, 2.6%로, 교감은 1990년 4.4%, 5.6%, 1.5%에서 1997년 7.0%, 6.2%, 1.7%로 약간의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여교원의 상위직 과소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수립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에 포함되어 있다. (표 21)

(표 21) 학교급, 직위 별 여교원수 및 여교원 비율

(단위 : 명, %)

년도	학교급	교 장	교 감	주임교사	평교사	계
1990	중 학교	136(6.3)	139(5.6)	2,645(17.2)	37,991(55.4)	40,911(46.2)
	고등학교	64(4.0)	27(1.5)	828(5.4)	20,045(27.3)	20,964(22.7)
1995	초등학교	222(3.9)	427(6.6)	7,716(29.0)	67,061(68.5)	75,426(55.2)
	중 학교	181(7.6)	165(6.1)	4,091(23.4)	43,407(57.7)	47,844(48.9)
	고등학교	66(3.7)	36(1.8)	1,310(7.3)	21,772(28.3)	23,184(23.5)
1997	초등학교	241(4.2)	448(7.0)	8,072(30.5)	68,232(70.1)	76,993(56.6)
	중 학교	163(6.7)	168(6.2)	4,378(24.8)	43,733(58.7)	48,442(9.7)
	고등학교	73(2.6)	33(1.7)	1,515(8.2)	22,808(29.0)	24,429(24.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47.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평균 여교수 비율은 1996년 현재 14.3%이다. 여교수 비율은 전임강사 18.9%, 조교수 15.5%, 부교수 11.8%, 교수 11.9%, 총(학)장 7.6%로 1990년의 20.1%, 16.0%, 13.9%, 8.9%, 8.1% 에 비해 큰 변동이 없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교수 비율의 과소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부는 교수 공개채용 강화 등을 통해 각 대학이 여교수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남녀공학

148. 초등교육은 일찍이 완전 의무교육화와 함께 남녀공학의 형태가 정착되었으며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남녀공학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7년 현재 중학교의 58.4%, 고등학교의 46.1%가 남녀공학이다. 고등교육기관은 여자대학들의 잇따른 공학화로 인해 1990년 84.8%에서 1997년 92.7%로 증가하여 남녀공학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표 22)

(표 22) 각급 학교별, 성별 학교 유형

(단위 : 교, %)

년 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 학	여학교	남학교	공 학	여학교	남학교	공 학	여학교	남학교
1990	1,343 (54.3)	535 (21.6)	596 (24.1)	651 (38.7)	490 (29.1)	542 (32.2)	190 (84.8)	31 (13.8)	3 (1.3)
1995	1,536 (57.2)	548 (20.4)	599 (22.3)	814 (44.5)	505 (27.6)	511 (27.9)	259 (90.9)	25 (8.8)	1 (0.3)
1997	1,588 (58.4)	541 (19.9)	591 (21.7)	872 (46.1)	514 (27.2)	506 (26.7)	293 (92.7)	21 (6.7)	2 (0.6)

(주) : 대학교에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이 포함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교과서 및 교과과정

149.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교련' 교과서의 내용이 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으나 1995년부터 실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통일되어 교과서 내용 구성 상의 남녀차별적인 요소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상의 구성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타나는 남녀 역할에 있어서 성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서 집필지침과 2종 교과서 검정 기준은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1997년도에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지문, 삽화, 사진에 있어 남녀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어 연구가 종료되면 그동안의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00년부터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개편 작업에서도 교과서에서의 남녀 차별적 요소의 보다 완전한 배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성교육과 진로교육

150. 초·중등학교 단계의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 관련 교과에 성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각급학교 단계별 장학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왔다. 199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성교육 교과서를 제작하여 중학교에 보급하고 각 학교에서 전담교사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으며 현재 고등학생용 성교육 교과서도 개발 중에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 학생부장, 양호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지도 및 성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51. 교육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로의 여성 진출 확대 등을 위해서는 여학생들이 성정형적인 진로 선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보다 이른 시기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은 물론 교육방송과 에듀넷을 통한 진로교육에도 힘써 왔다.

남녀평등의식교육

152. 「여성발전기본법」 제19, 20조에 의해 정부는 1993년부터 교원에 관한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때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교육내용을 편성하도록 권장하는 교원연수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기관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에는 총 13,965명, 1994년에는 23,635명, 1996년에는 24,287명의 교원 및 교육행정자가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하였다. 교원연수기관 외에도,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초·중등학교 교원, 취학전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1984년 이래 연인원 1,094명이 수료하였다.

(라) 장학금 기타 연구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153. 중·고등학교 장학금 수혜율은 성별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남녀별 비교가 불가능하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비 감면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장학금 급여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대학교의 장학금 급여와 학비감면의 수혜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다. 1990년 장학금 급여율은 여자 6.2%, 남자 4.8%, 학비감면율은 여자 5.8%, 남자 4.6%이었으나 1996년은 장학금 급여율이 여자 7.4%, 남자 4.6%, 학비감면율이 여자 4.1%, 남자 3.3%이다. 대학원의 경우는 장학금 급여율은 남자가 약간 높고 학비감면율은 여자가 약간 높다. (표 23)

(표 23) 장학금 급여율과 학비 감면율

(단위 : %)

년도	학비지원 종류	대학교			대학원		
		여성비율	여 자	남 자	여성비율	여 자	남 자
1990	장학금급여자	36.7	6.2	4.8	17.6	3.6	4.9
	학비감면자	35.6	5.8	4.6	29.6	8.4	5.8
1996	장학금급여자	46.9	7.4	4.6	25.5	4.3	5.1
	학비감면자	39.9	4.1	3.3	30.5	5.9	5.4

(주) : 대학교에 전문대학, 교원대학, 4년제 일반대학이 포함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년도.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154.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교육화하였고, 1970년 이후 국민학교 취학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문맹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UNESCO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990년 15세이상 문맹자는 총 1,185,000명으로 문맹률은 여자 6.5%, 남자 0.9%이었으며 1995년에는 총문맹자수 697,000명, 남자문맹률 0.7%, 여자문맹률 3.3%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남녀 모두 문맹률이 낮아진 가운데 특히 5년간 여자의 문맹률이 절반으로 낮아져 남녀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155.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과정으로는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이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이 기관에의 여학생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1997년 여성의 비율이 57.2%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개방대학의 경우도 1990년 15.1%에서 1997년 21.9%로 증가하였다. 1996년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단계로 진학할 수 있는 독학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응시자의 56.9%, 합격자의 55.8%가 여자이며 합격률은 여성이 35.0%, 남성이 36.6%로 남성이 약간 더 높다.

156. 교육에 있어 남녀간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기회로서 사회교육이 있다.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기술교육과 여가·취미교육, 기초·교양교육, 학력인정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양교육과 함께 저소득층 여성에게 자영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1960년대부터 전국 시·도에 설립한 여성회관 및 여성복지관은 1985년 35개, 1990년 38개소, 1996년 61개소로 증설되었다.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한국여성개발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문화센터, 여성단체 등이 있다.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1997년 10월 현재 148개 대학에 설립되어 9백 9개 과정의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 6월 현재 177개에 이르는 문화센터는 주로 주부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교양증진 강좌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4년 현재 전국적으로 4,050여개(정부등록단체 62개 포함)에 달하는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권익보호와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사설학원(private institute)의 경우 1997년 현재 58,134개의 학원에서 총 3,537,673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강생 중 여성의 비율은 5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157. 1996년 현재 중학교 중퇴율은 여학생 1.01%, 남학생 1.04%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 중퇴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중퇴율이 훨씬 높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중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중퇴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여서 여학생 2.91%, 남학생 4.85%의 중퇴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퇴율 증가와 중퇴자들의 비행과의 연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중퇴자를 위한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의 확충, 대중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학교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학교 복귀의 기회 제공,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등 중퇴자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적극 수립 중이며, 이에 있어 남녀 학생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 (표 24)

(표 24) 중등학교에서의 중퇴율

(단위 : %)

년 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여	남	여	남	여	남
1990	0.85	1.20	1.13	2.35	1.64	4.59
1996	1.01	1.04	0.97	1.65	2.91	4.8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년도.

158. 정규교육과정에 다닐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중등교육단계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로서 준학교들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깝게 높아짐에 따라 준학교의 학교수와 재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정규교육에의 참여율이 낮았던 만큼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여 배움의 기회를 계속하려는 사람들 중 여자의 비율이 높다. 고등교육단계에서 학업을 계속할 기회로는 앞의 (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독학학위 취득제도 등이 있다.

159.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와 성인여성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제11조에 언급하였다.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160. 스포츠와 체육교육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영역이었으나 여학생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체육중학교의 체육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1990년 27.9%와 19.5%에서 1996년 28.4%와 28.7%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4년제 대학의 체육학 관련 전공자 중 여학생 비율은 1990년 18.6%, 1996년 19.5%이다.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161. 19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성인병 예방교육, AIDS 및 성병 예방교육 등을 위해 보건교육기관, 사업장 및 각급학교에 VTR테이프, 슬라이드, 소책자 등 인쇄 및 시청각 보건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건강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지침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및 여성회관, 민간 사회교육기관 등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다양한 강좌들이 개최되고 있다.

162.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인구 자연증가율이 1960년 3.0%에서 1995년 0.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족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5년 한해동안 실시된 불임시술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2.7%, 여성의 비율이 27.3%로 불임시술의 약 3/4이 남성에게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15~44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시피임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자 15.9%, 남자 18.5%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피임의 부작용이 남성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남성피임의 증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여성의 높은 사회 진출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996년에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증가 억제에서 인구의 질 향상과 가족복지의 증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출생 성비의 불균형과 인공임신중절의 남용의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표 25)

(표 25) 전체 피임 중 불임시술이 차지하는 비율 및 남녀 불임시술 비율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정관수술 비율	33.1(54.9)	26.2(62.4)	19.5(69.0)	14.4(72.7)
난관수술 비율	27.2(45.1)	15.8(37.6)	8.8(31.0)	5.4(27.3)
전체불임수술 비율	60.3(100.0)	42.0(100.0)	28.3(100.0)	19.8(10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6.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163.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32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 제 32조 제 4항에서는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정신은 「여성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기타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조 (나)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164.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9일 유엔산하 16개 전문기구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국제노기구(ILO)의 회원국이 되었다. 1996년 6월에는 ILO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ILO 가입후 국내의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노동분야의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인구

165.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의 증대로 1996년 현재 여성경제활동인구는 8,568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1,059천명이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6년 48.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표 26) 특히 25~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두드러지게 낮은 편으로 M자형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기 때문이다.(표 27)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숙련 형성을 저해하고 동일직종 취업이나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여 임금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존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표 2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남	여	남	여
1990	11,030	7,509	74.0	47.0
1996	12,620	8,568	76.1	4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1. 1997

(표 27)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6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총 수	7,509	47.0	8,568	48.7
15-19세	392	18.7	258	13.6
20-24세	1,255	64.6	1,324	66.0
25-29세	836	42.5	1,023	51.1
30-34세	933	49.6	964	49.1
35-39세	841	58.0	1,182	60.1
40-44세	808	60.7	1,035	65.6
45-49세	729	63.9	787	62.2
50-54세	656	60.0	628	57.2
55-59세	481	54.4	651	57.3
60세이상	578	26.5	806	29.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1. 1997

여성취업자수

166. 총노동력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와 더불어 여성 취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96년에는 8,434천명으로 '91년의 7,341천명에 비해 12.3%가 증가하였다. 총취업자 가운데 여성구성비는 1996년 40.6%이다.

산업별 여성취업자

167. 1996년 현재 여성취업을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5,575천명(전체여성취업자의 66.1%), 광업 및 제조업에 1,718천명(20.4%), 그리고 농림·어업 등 1차산업에 1,141천명(13.5%)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별 분포는 1990년에 비해 1차산업과 2차산업 여성취업자가 각각 474천명, 363천명 줄어든 반면, 3차산업 취업자는 1,775천명이 늘어난 것이다.(표 28)

(표 28)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산업		1990	1996
1차 산업	소계	3,237(17.9)	2,405(11.6)
	남자	1,742(16.3)	1,264(10.3)
	여자	1,495(20.3)	1,141(13.5)
2차 산업	소계	4,990(27.6)	4,701(22.6)
	남자	2,909(27.2)	2,983(24.2)
	여자	2,081(28.2)	1,718(20.4)
3차 산업	소계	9,857(54.5)	13,657(65.8)
	남자	6,057(56.6)	8,083(65.6)
	여자	3,800(51.5)	5,575(66.1)
총 계	소계	18,085(100.0)	20,764(100.0)
	남자	10,709(100.0)	12,330(100.0)
	여자	7,376(100.0)	8,434(100.0)

(주) : ()안은 취업자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1, 1997.

직종별 여성취업자

168. 1996년 현재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의 분포를 보면, 서비스직 여성이 2,791천명(여성취업자의 33.1%)로 가장 많고 생산관련직 2,253천명(26.7%), 사무직 1,323천명(15.7%), 농림·어업직 1,073천명(12.7%), 전문가, 기술가공 969천명(11.5%), 입법자,관리자는 25천명(0.3%)의 순이다. 입법자, 관리자 및 전문가, 기술가의 경우 1985년의 0.28%, 10.9%에 비해 각각 0.3%, 11.5%로 증가하였다. (표 29)

(표 29) 직종별 여성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직종	1993	1995	1996
입법자,관리자	32(0.4)	23(0.3)	25(0.3)
전문가,기술가	823(10.6)	896(10.9)	969(11.5)
사무직	1,123(14.5)	1,277(15.5)	1,323(15.7)
서비스	2,278(29.5)	2,631(32.0)	2,791(33.1)
농림·어업	1,132(14.6)	1,110(13.5)	1,073(12.7)
기능공 및 조립공	1,273(16.5)	1,096(13.3)	1,069(12.6)
단순노무자	1,078(13.9)	1,191(14.5)	1,184(14.1)
전체	7,739(100.0)	8,224(100.0)	8,434(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1996, 1997.

시간제 여성근로자

169.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0,764천명중 시간제 근로자는 1,298천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여성은 817천명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62.9%에 해당된다.

170.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제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992년 1월부터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19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업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여성의 취업지원

171.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혼여성의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1,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제3조에 언급되어 있다. 동 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로는 직업능력 개발,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존 지원, 고용기회 균등실현 등이다.

17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실시기관의 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가 실시하는 것이고 사업내 직업훈련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인정직업훈련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기관별 여성훈련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0) 정부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직업훈련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30% 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0) 연도별, 성별, 훈련기관 주체별 훈련생 (단위 : 명, %)

구분		1990	1996
계	계/여자	67,702(100.0) / 10,526(15.5)	218,992 / 34,077(15.6)
	공공	계/여자	24,441(100.0) / 1,668(6.8)
사업내	계/여자	25,690(100.0) / 4,665(18.2)	151,303 / 22,367(14.8)
	인정	계/여자	17,571(100.0) / 4,193(23.7)

(자료) : 노동부, 「여성과 취업」, 해당년도.

173. 정부는 1991년에 여성의 고급기술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여성전용 훈련원인 안성여자기능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곳은 2년 과정의 다기능기술자(technician) 양성과정으로 기계설계기술, 정밀 계측기술, 정보기술, 전자기술, 패션디자인 및 귀금속공예기술 등 6개 학과에 학과당 40여명의 여성 훈련생이 훈련을 받고 있다.

174. 또한 정부는 정규직업전문기관에 다니기 힘든 기혼여성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매년 3개소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하여 '97년 현재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제도사 등 여성적합직종 위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직업교육을 실시하여, 1995년에는 39개 직종에 4,188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취업알선 38,698명, 보육시설이용 17,482명과 8,178명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175.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대해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으며 남편도 부인을 대신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1조). 또한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 유급휴가기간 60일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95.7월부터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현황을 보면 1995년은 7월-12월 6개월간 494명분 5천7백만원에 그쳤으나 1996년 11월 현재 4,058명분 15억원이 지급되어 사업실적이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아직 육아휴직제의 보급율이 저조한 실정으므로 '98년에는 육아휴식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99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76. 기혼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일정액 (40만원~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77. 정부는 전국 46개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여성전문인력의 취업 알선을 위해 전국에 3개소의 「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8년까지 총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96년의 경우 전국 국·공립 및 민간기관에서 총 1,215천명의 여성취업을 알선하였다.

178.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제11조 (다)항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고용분야의 남녀평등조치

179.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8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취업확대와 근로조건 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95년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제2

조 제(가)항에 언급되어 있다.

180.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4-5년에 걸쳐 노.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법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1990년 사립대, 병원, 호텔업종에서의 여성차별적인 취업규칙을 심사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1991년에는 고졸행원 채용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는 은행 인사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의 폐지를 지시하였다. 1992년에는 선도부문으로 설정한 은행, 제2금융기관, 30대그룹 대표기업 등 169개 업체의 제규정을 일제 심사하여 1993년 상반기중 이들 169개 업체 모두의 성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정부는 사업장의 성차별규정 개선을 위하여 취업규칙 심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4년 300인 이상 사업장 → '96년 150인 이상 → '97년 100인 이상 → '98년 100인 미만)

181.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래 채용과 근로조건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남녀차별의식과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범국민적인 고용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년중 10월을 「고용평등의 달」로 설정하고 고용평등에 대한 홍보, 세미나,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체 사용자들의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공단지역·사용자외의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182. 서울지방법원은 1995년 5월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모집광고를 낸 일부기업들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각 1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도록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벌금액도 상향조정하여 모집·채용시 남녀차별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여성경제인 지원시책

183.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여성경제인의 날」(7월 6일)을 제정하여 모범경제인에 대한 포상실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구조개선자금 등을 이용한 자금지원과 함께 인력(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업체배정시 가산점 부여 등), 판로지원 등 간접적 지원책을 실시해 왔다. 이와 아울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성경제인 공제사업기금제도 도입 및 국가 및 공공기관의 조달시 여성경제인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활동촉진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84. 198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는,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ILO협약중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를 비준함으로써 남녀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연공급으로 되어 있어서, 남녀동일연공·동일임금으로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85. 우리나라 남녀간 평균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남자의 61.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 53.4%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큰 격차가 남아 있다. 이의 주요원인은 아직도 여성근로자가 임금결정요소인 학력, 연령, 경력, 근속년수 등에서 남자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표 31)

(표 31) 연도별 남녀 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단위 : 천원, %)

구 분	1990	1995
남성임금	727	1,361
여성임금	388	790
임금격차	53.4	58.0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 1997.

가사노동

186. 미시적으로는 가정소득에 거시적으로는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가사노동은 법률적,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생활비용의 부부공동부담원칙,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기여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상속세법 개정(1990, 1994, 1996)으로 배우자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가 대폭상향되었다.

(표 33) 배우자의 상속세, 증여세 공제한도

	'92	'94	'96	'97
상속세	1억원+(결혼년수*600만원)	1억원+(결혼년수*1,200만원)	현행 혹은 10억원 선택	실제 취득액 30까지 상향조정
증여세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	3,000만원+(결혼년수*300만원)	5,000만원+(결혼년수*500만원)	

187. 자동차보험약관 개정('95.1.16)으로 주부의 보험금 지급의 산정기준인 일용근로자임금의 정의 변경에 따라 보험금이 상향조정되었다. 즉 종전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에서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또는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중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주부가사노동가치의 산정기준인 일용근로자 임금이 현실화된 것이다. (1일 기준 : 94년 22,300원, 95년 27,218원, 96년 31,866원)

188.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가사노동가치의 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1998-2002) 중에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활용조사가 실시되어져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근로자 유급휴가

189.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휴가중에 임금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추가적인 노동비용 부담은 여성채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1996년 모성보호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 연차유급휴가 : 10일을 유급으로 부여(2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매년 1일씩 가산)
- 월차유급휴가 : 매월 1일(연 12일)을 유급으로 부여
- 생리유급휴가(여자) : 매월 1일(연 12일)을 유급으로 부여
- 산전·후휴가(여자) : 60일을 유급으로 부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90. 정부는 국민들이 노령, 질병 등에 대비하여 소득 및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13조(가)호에 언급되어 있다.

191.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법적 장치로서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4조에 언급한 바와 같다.

장애인여성 보호·지원사업

192. '95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1%에 해당된다.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남성의 경우 지체장애가 많은 한편 여성은 노령이나 만성질환에 의한 장애,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 등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3.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취업과 관련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채용토록 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을 대폭 할인 및 감면해주고 있다.

노인여성 보호·지원사업

194.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계속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65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9%이며 이중 여성은 1,670천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일반적으로 성별 구분없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시행예정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노인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5. 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경제력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는 노인들을 위해 1981년부터 노인취업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1986년부터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능력에 맞는 간단한 작업을 통하여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한 작업에 의하여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3%)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1997년부터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으로 확대하였다.(중전 70세 이

상) 199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1998년 7월 부터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각출 근로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196.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제4조 「여성특별보호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197. 정부는 저소득 미혼여성을 위해 1995년 현재 전국 83개 지역 총 8,335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총 24,000명이 입주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주고, 미혼여성들이 주위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거주하므로써 노출될 수 있는 도덕상, 보건상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출산휴가

198.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산전, 산후의 여자는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 11조 제1항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그 배우자인 남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72조는 6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유급으로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는 여성고용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출산급부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고용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출산급여의 사회적 분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00. 정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내실화 3개년 계획('95~'97)」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경우 '90년말 1,919개소가 '96년말 12,098개소로써 연평균 74.7% 증가하였고 보육아동은 '90년말 48천명에서 '96년말 403천명으로 연평균 102.5% 증가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정부의 지원 하에 보육시설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7년 9월말 현재 14,627개 보육시설에서 504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표 33)

(표 33) 운영주체별 보육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1991년	1995	1997. 9
국공립	503 (37,017)	1,029 (78,831)	1,130 (88,894)
민간	1,217 (36,099)	4,125 (170,142)	7,603 (341,311)
직 장	19 (712)	87 (2,388)	153 (5,108)
가 정	1,931 (15,613)	3,844 (42,116)	5,741 (69,058)
계	3,670 (89,441)	9,085 (293,747)	14,627 (504,371)

(주) : 보육시설이라 함은 정부에 신고 또는 인가된 보육시설을 의미

(자료) : 정무장관(제2)실, 「여성백서」, 1997

보육시설 지원

201. 그간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91년 419억원, '95년도 1,774억원, '97년도 2,924억원으로 연평균 28.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4년부터 '97년까지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7,000억원의 보육시설 자금을 연8%, 최대 9억원, 최장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였다.

202.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997개소에 대하여 1개 시설당 연평균 43,000천원씩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3. 정부는 부족한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의무화 등 각종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인들이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991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고, 1992년 5월에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했다. 1995년 9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97년 11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직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204. 근로기준법 제 72조 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신중의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2조 (나) (바)호에 언급한 바와 같다.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5. 보건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이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신부 지원, 의료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낙태 금지와 교도소 수감중인 임신부의 특별보호 등이 있다. 또한 1995년 5월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예방 및 보건교육사업이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이 됨에 따라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여성건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최근의 건강관련 지표들은 여성건강이 상당히 증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관련 기본지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평균수명

206.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1995년 현재 73.5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출생시 여성의 평균 기대 연령은 77.4세로 남성의 69.6세보다 7.8세가 더 높다. (표 39) 65세이상 여성노년인구는 1980년 전체 인구 중 4.9%에서 1995년 7.2%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8.4%로 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모성 및 영아사망률

207.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10,000명당 모의 사망율로, 1980년 4.2명, 1985년 3.4명, 1992년에는 3.0명, 1996년에는 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2개월미만 아동의 사망비율로, 1980년 36.8명, 1985년 13.3명, 1992년 12.8명으로 1996년 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

208.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전개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1970년 2.17%에서 1995년 1.01%로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1995년 1.7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6월 인정책 방향을 인구증가 억제에서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출생 성비의 불균형과 인공임신중절의 남용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9. 가족계획 실천율에 대해서는 제10조 제(아)항에 언급하였다.

210.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 즉 피임의 성공적인 실천은 출산 및 양육기간을 단축시켜 여성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성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률이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임방법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임방법을 잘못 사용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4)

211. 우리나라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1968년 16%에서 1985년 53%로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하여 1993년에는 49%에 도달하였다. 도시·농촌간 차이는 1968년 도시가 농촌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농촌과 도시의 인공임신중절률이 같은 수준이다. (표 34)

(표 34)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단위 : %)

	1988	1993
전체	52	49
도시	54	49
농촌	47	49

(주) : 15-44세 여성 1000명 당 비율임

(자료) :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12. 대한민국은 분만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7장 제269조, 제270조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부녀 또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동의없이 또는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등은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 사유는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1995년 형법 개정과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지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태아의 생명도 생명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개정된 형법에서도 낙태죄를 존치하게 되었다.

2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홍보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통하여 학생, 사업장 근로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원치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등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성비 불균형

214.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남아선호는 더욱 높아져 1980년부터 출생성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70년에는 109.5이었으나 1994년에는 115.5, 1995년에는 113.4이었다.

215. 낮은 출산율, 남아선호 사상과 함께 태아성감별의 기술의 도입으로 여아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여 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간 470억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를 예방하며, 성비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태아성감별행위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의해 불법시술을 한 의사의 면허취소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한가족계획협회 산하에 성문화연구소, 보건소에 가족보건복지 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성비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국민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결과 성비는 2,000년 112.7, 2,010년 108.9로 원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자보건사업

216. 1986년 5월 전면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을 위해 기초건강진단 실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실시 등의 서비스 제공과 농어촌지역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시설분만 유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DPT, DT, MMR, Polio 등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무료) 및 사후 관리(특수조제분유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 모자수첩 발급 :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출생증명서 등 일련의 산과적 기록은 매우 중요하므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의료인이 산전관리 내용과 분만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므로써 영유아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 모유수유 권장 : 정부는 현재 30% 정도로 낮은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보건교육·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자동실제(母子同室制)를 권장하고 있다.

AIDS 환자 현황 및 대책

217. 1997년 6월 현재 AIDS 환자는 83명이며, HIV Positive로 판정된 환자는 679명으로 이중 여성 감염자는 83명이고 그중 15명은 사망하였다. (표 35)

(표 35) 연도별 AIDS 감염 현황

(단위 : 명)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비고(사망자)
총감염자	679	76	78	90	108	102	56	남: 596(113)
(여자)	(83)	(4)	(7)	(12)	(19)	(12)	(6)	여: 83(15)
감염자 중 환자	83	2	6	11	14	22	20	

(자료) : 보건복지부, 각년도.

218. 1993년 이후에 특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HIV 감염자들 중에는 윤락여성이 아닌 일반주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9.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AIDS의 국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제정하여 AIDS환자 발생 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보호관리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윤락여성을 포함하는 성병관리 대상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성병 및 HIV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약소비여성 보호·관리사업

220. 정부는 마약류 확산 예방을 위해 포스터, 표어, 교육책자 등 홍보자료를 1995년에 4종 147천부, 1996년에 4종 150천부를, 1997년에는 총 4종 제작·147천부를 배포한 바 있고 홍보용 비디오는 전국 900여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21. 또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재활훈련을 위해 전국 22개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통해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치료를 위해 경남창녕군소재 국립부곡정신병원부설로 마약류

중독진료소를 200병상규모로 건립하여 1997년 12월에 개원하였다.

222. 정부는 여성의 기타 약물오·남용에 의한 영향에 대한 보건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99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9월 1일을 기해 발효한 바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민에 대해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을 꾀하고 있어 이들 사업수단으로 인식되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뿐만 아니라 정부보건기구, 민간사회교육기관, 기업 등을 통해서 국민보건교육이 강화되면 여성의 약물오·남용, AIDS, 성기감염, 피임, 태아성감별 등을 포함하는 여성건강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및 사회교육이 활성화되고 여성건강 증진 및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과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족 급부금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

223. 정부는 1998년 상반기중 수립예정인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에 여성복지 부문을 별도로 포함하여, 저소득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 촉진, 미혼모 발생예방 및 사후대책 강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보호 강화,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24. 정부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부딪친 국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녀를 막론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225. 1986년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해 가입자의 각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부터는 이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1995년 7월부터는 농어민 및 군 지역거주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26.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1996년 현재 여성 가입자는 1,911천명으로 전체 가입자 7,426천명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여성가입자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남성가입자에 비하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

(표 36)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1994	1995	1996
여	1,499,074 (27.5)	1,891,688 (26.1)	1,911,211 (25.7)
남	3,945,744 (72.5)	5,365,706 (73.9)	5,514,489 (74.3)
총계	5,444,818(100.0)	7,257,394(100.0)	7,425,700(100.0)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6.

227.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장해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199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 현황을 보면 여성이 444,904명으로 전체 수급자 945,848명의 4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으며 매년 여성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험

228. 1989년 7월부터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보호를 받는 저소득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가입자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농어촌·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누어진다. 1996년 현재 22,312천명의 여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서 성간 불균형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의료보험제도별·성별 적용인구

(단위 : 명)

		계	직장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1994	여	21,642,669	8,195,775	2,432,362	11,014,532
	남	21,615,394	8,220,036	2,351,949	11,043,409
1995	여	21,991,409	8,319,331	2,448,778	11,223,500
	남	22,024,491	8,424,733	2,366,368	11,223,390
1996	여	22,312,139	8,454,897	2,489,656	11,367,586
	남	22,291,177	8,579,861	2,391,326	11,319,940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6

생활보호사업

229.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985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89년에는 전 인구대비 5.3%에서 1997년에는 2.3%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는 아주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에 자활보호대상자는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생계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가구는 1989년에 164,440가구에서 1997년 186,627가구로 증가하였고, 자활보호대상가구는 425,475가구에서 257,364가구로 감소하였는데, 거택보호대상자는 감소한 반면 가구수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1인세대(홀로 사는 노인)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거택보호대상가구 중 여성가구 가구의 비율은 62.2%에서 65.0%로, 자활보호대상가구에서는 38.0%에서 47.3%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여성가구주가 차지

하는 비율이 매년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230. 생활보호대상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등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출산여성에 대하여는 해산보호비가 지급되고 있다. 특히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지원이외에 주·부식비등 생계비가 매월 지급되고 가구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의료보호

231.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보호의 대상자는 생활수준에 따라 1종 보호대상자(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사회복지시설 수용자)·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국가유공자·인간문화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귀순복한 동포·성병감염자), 2종 보호대상자(자활보호자)로 구분·보호하고 있다.

232. 1996년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여성은 731,03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6.7%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이보다 적은 557,459 명으로 43.3%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노인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1).

모자복지사업

233. 정부는 모자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전체 모자가정 수는 43,768가구로 총 124,691명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은 20,435가구로 전체 모자가정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은 47.4%,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자가정은 5.9%로 나타났다. 전체 모자가정 중 이러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전체 모자가정의 5.6%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38).

(표 38) 모자가정 현황

(단위 : 세대, %)

	계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미보호율
1994	51,925	18,532	25,665	270	14.4
1995	46,793	20,866	23,046	220	5.7
1996	43,801	20,435	20,761	142	5.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234.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음과 같다. 모자복지법에 의해 1997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00천원 미만인 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자녀의 교육비 및 6세 이하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지원하여 1997년 현재 21,281세대가 지원받았다. 세대당 1,2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한 무주택 모자가정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3년이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내 연장가능)이며 이 기간중 별도로 생계비,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1996년 현재 37개소의 모자보호시설에 837세대가 보호받고 있다. 이들이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다시 저소득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관한 권리

은행대출

235. 은행의 신용거래 및 대부는 상대자의 경제적 신용상태, 자산수준 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용거래나 대부에 있어 차별을 두는 제도, 업무처리지침이나 내부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고,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236. 여성이 은행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단,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그 조건은 남녀 공히 재산세나 소득세를 낸 과세증명서가 있거나 거래실적에 따라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237.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편모가 생활안정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등이 필요할 때 이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체육 등 문화생활

238.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용률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은 45.4%가 수면 및 가사 잡일, 24.4%가 TV시청으로 여가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수면 및 가사 잡일이나 TV시청에서는 여성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잡

기 및 승부놀이 7.4%, 스포츠 및 여행 20.0% 등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239. 정보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신문관심 부문에서는 여성의 경우 사회(39.1%), 문화(26.3%) 부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는 정치(42.0%)와 스포츠(17.7%)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성은 연속극(54.5%), 오락(11.2%)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뉴스(52.7%), 스포츠(19.1%)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반사무와 전자오락, 정보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1. 당사국은 농촌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농촌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촌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농촌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해독 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비공식훈련 및 교육, 특히 지역사회 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 (바)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농촌여성인구

240. 1960년대 이후 산업화정책으로 농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 농촌인구는 18,172천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4,851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촌 여성인구는 1970년 9,214천명에서 1995년 2,478천명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한다. 이중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95년 25.9%로 증가하여 농업노동력의 구조가 노령화·여성화되고 있다.

여성의 농업생산

241.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청장년층 남성인구를 중심으로 한 이농, 이직으로 여성들의 농업 참여는 증가하고 여성 노동의 농업생산에 대한 기여분이 증가하였다. 농림업 취업자 가운데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 44.6%에서 1995년에 48.6%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노동투하시간은 1990년 1,593시간에서 1995년 1,414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여성노동의 비중은 1990년 47.3%에서 1995년 48.2%로 증가하였다.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계획 수립

242.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기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여성개발부문」 중 농업경영인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고 농공단지내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촌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농촌주민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에 농촌여성이 참여하여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43. 정부는 농촌구조 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3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이 결과는 1998년부터 시행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폭 반영되었다.

농촌여성 관련 정책기구 구성

244. 정부는 1995년 농림부 내에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했으며 1996년에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직속의 '농어촌여성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보건서비스 확충

245. '88년부터 농촌지역에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농촌지역주민의 의료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주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시설과 인원을 배치하여 급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농촌지역에는 2,665개소의 각종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3,737명의 의료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정부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부인병, 성인병, 농부증 등 간이 건강진단을 '8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96년까지 54,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육시설 설치 및 확대

246. 1997년 9월 현재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은 총 1,527개소가 설치되어 75,95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보육시설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을 보육취약지역에 포함시켜 중점설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지역 보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차량 운

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확대

247. 농촌지역의 경로당수는 1992년 14,347개소에서 1995년 17,87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용노인수도 1992년 593천명에서 1995년 72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농촌여성교육

248.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증가하고 농업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 영농설계교육의 경우, 1992년에는 전체 교육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14.5%였던 것이 1996년에는 전체 교육참여자 609천명 중 여성이 112천명으로 18.4%를 차지하였다.

249. 여성농업취업자 중 농기계조작능력을 지닌 여성의 비율이 낮아 여성들의 노동 부담이 과중되는 있다. 이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여성들에게 농기계조작법, 정비요령, 안전사고 예방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5,039명, '96년 5,3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50. 농촌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농촌여성이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촌여성과제교육과 도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농촌여성지도자반교육으로 구성된다.

251. 농촌여성과제교육에서는 일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저장, 주거 및 농작업환경 개선, 농가가계경영, 전통문화전승교육, 부업기술, 컴퓨터 활용교육, 의식개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참가자는 1992년 107천명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192,975명으로 증가하였다. 농촌여성지도자반교육은 농촌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1996년에는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52. 생활과학관은 농촌여성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각종 실습시설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농촌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21개소, 31개소의 생활과학관을 설치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253. 1994년 농협법이 개정되어 여성농민의 농협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법 개정으로 1993년 전체인원 1,956,159명 중 여성조합원이 160,479명으로 8.2%였던 것이 1996년에는 전체 조합원

2,010,315명 중 여성조합원은 239,368명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위 농협 수준에서 여성이사와 여성감사가 선출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254. 1994년부터 농업인 후계자 선정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전체 농업인 후계자 중 여성의 비율이 1992년 2.4%에 불과했던 것이 1996년 8.6%로 증가했으며 1997년에는 선정된 농업인 후계자 8,526명 중 여성후계자가 823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여성조직 활성화

255. 정부는 1977년 「부녀지도협의회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부녀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의 새마을 부녀회는 1995년 23,70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957천명이다. 각 부녀회 단위로 가족보건 향상, 건전가정 조성, 환경 보호, 생활 합리화, 농가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도 선정하여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56.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후계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한 생활개선회는 농촌사회 발전에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은 생활개선과제를 실천하고 농외소득활동, 농촌생활환경보전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농촌간 농산물 직거래와 문화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생활개선회 참여여성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7년 현재 172개 조직에 59,939명이 참여하고 있다.

257.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관련단체로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있다. 전문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농민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농촌여성 소득증대

258.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촌노인들의 생활보장에 기여하며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 여성노인들의 생활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 13조 (가)호에 언급한 바 있다.

259. 1990년부터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들이 지역의 농산물이나 주변 여건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농산물 가공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국비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95년에는 7개도 9개소에 139백만원 (개소당 15,4백만원), '96년에는 8개도 9개소에 180백만원 (개소당 2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공동작업장 및 생산설비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

구입, 포장지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이었다.

260. 농촌여성이 마을 부녀회 단위 또는 인근부락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외소득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여성개발부문」을 통해 사업자금 지원과 기술지도, 판매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261. 1983년부터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농가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126,000호에 1,337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1996년에는 15,000호에 420억원을 융자지원하였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가주부의 취사시간을 20~40% 절감하여 농촌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262. 농촌여성은 주로 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에 많이 참여하고 작업시간도 긴 만큼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농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작업 보조기구 및 장비를 개발·보급하며 농작업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63. 1995년에는 전국에 건강관리실 262개소, 중간휴게실 163개소, 마을 공동쉼터 28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작업보조기구 43,000점을 보급하였다. 1996년에는 전국에 건강관리실 169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200개소, 마을 공동쉼터 237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농작업 보조기구를 81,000점 보급하였으며 '96년도부터 새롭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80개소 설치하였고 시군별로 계속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264.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2조 (가)호에 언급한 바와 같다.

265. 이러한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2조 (가)호에 언급한 바와 같다.

266.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또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이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와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